2026. 10.

중국 중국 쑤저우 중급인민법원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사법보호 규칙 연구보고서' 발표

강원대학교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교수
손한기

1. 개요

생성형 인공지능의 콘텐츠 생성 과정은 학습데이터를 수집·처리하여 모델을 훈련하는 단계(이하 '입력 단계')와, 훈련된 모델이 텍스트·이미지 등 결과물을 생성·출력하는 단계(이하 '산출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입력 단계에서는 선행 저작물의 무단 이용이 복제권 등을 침해하는지, 산출 단계에서는 생성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및 그 권리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각각 문제된다. 이는 기존 저작권 법리로는 곧바로 해결되지 않는 새로운 쟁점으로, 중국에서는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책임에 관한 구체적 판결과 실무 논의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과제팀은 「涉人工智能著作权司法保护规则研究」(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사법보호 규칙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판 실무의 관점에서 위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안하였다.[1] 이 보고서는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및 쑤저우 지식재산법정 소속 법관들로 구성된 과제팀이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한 학설 정리에 그치지 않고 법원 실무의 문제의식과 정책적 제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특별한 의의가 있다.

이 글은 위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국내에 소개하고, 그 이론적 기여와 한계를 평가하고, 아래의 내용은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 평가한 것이다.

2. 주요내용

1) 핵심 쟁점: 데이터 입력단계와 생성물 산출단계

보고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저작권 문제를 입력 단계(학습데이터 이용)과 산출 단계(생성물 처리)로 나누어 파악한다. 입력 단계에서는 ①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 보호기간 중인 저작물을 허락 없이 학습데이터셋에 편입하는 행위 자체의 침해 위험, ② 모델 훈련 단계에서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과정의 이용을 '부수적 복제'로 볼 것인지 '준 표현적 이용'으로서 침해로 취급할 것인지의 논쟁, ③ 콘텐츠 산출

1) 刘建功·朱劼纯·徐飞云·薛忠勋·魏子钦(江苏省苏州市中级人民法院课题组), 「涉人工智能著作权司法保护规则研究」, 《数字法治》 2026年第3期, 168-180쪽.

단계에서 생성물이 원 저작물의 보호받는 표현 요소를 실질적으로 재현했는지의 판단이 문제된다고 정리한다. 산출 단계에서는 전통적 창작성 판단기준인 '인간중심주의'(자연인의 정신적 활동에 기초)와 '객관적 표준설'(독자적으로 완성되고 최소한의 창조성만 갖추면 충분하다는 견해)이 충돌하며, 권리 귀속에 관하여도 AI를 인간 창작의 도구로 보는 '도구론'과 준주체로 보는 '주체론'이 대립한다고 서술한다.

2) 학습데이터의 합리적 이용 경계

보고서는 먼저 데이터셋 자체가 독창성을 인정받기 위한 문턱(독자적으로 구성되었는지 및 최소한의 창조성을 갖추었는지)을 검토한 뒤, 데이터 전처리 및 모델 학습 행위의 법적 성격을 논한다. 보고서는 독일의 이른바 'LAION 사건'을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이미지 수집에 텍스트·데이터마이닝 예외가 적용되어 비침해로 판단된 사례로, 'GEMA v. OpenAI 사건'을 보호되는 노래 가사가 대규모 언어모델의 파라미터에 기억·저장되어 이용자 요청에 따라 상당 부분 재현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경우, 그 모델 내 저장과 생성물의 출력이 저작권상 복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로 소개한다.[2] 다만 GEMA 사건은 학습데이터 이용 일반에 대한 포괄적 판단이 아니라, 특정 가사가 모델에 사실상 기억되어 재현된 사안을 전제로 한 뮌헨 지방법원 I의 제1심 판단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습행위를 표현형(원작의 스타일을 포착해 재구성)과 비 표현형(추상적 규칙만 추출)으로 구분하고, 이른바 '울트라맨 사건(奥特曼案)'[3]을 인용하여 사전처리가 모델 학습의 기술적 필수단계에 그치는 경우와 그 자체로 경쟁적 표현을 형성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합리적 이용의 판단기준으로는 EU 「디지털단일시장 저작권지침」의 특수목적 예외, 일본 저작권법 제30조 제4항의 비향유적 이용 조항,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의 구글 디지털도서관 사건, 그리고 중국의 '「80후의 독립선언」 영화 포스터 사건'에서 형성된 '변형적 공정이용' 법리를 함께 원용하며, 보고서는 상업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이용 목적의 전환성과 원저작물 시장에 대한 비 대체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보고서는 미국의 Meta 및 Anthropic 관련 분쟁을 참조하여, 설령 AI 학습의 목적이 변형적 이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학습데이터의 취득 경위와 권리자의 이용허락 시장에 대한 영향은 별도로 심사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강조한다.

3)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 비교법적 검토

보고서는 중국·미국·EU의 대표 사례를 실증적으로 대조한다. 중국에서는 2019년 '모 로펌 대 모 검색엔진 사건'에서 자연인 창작요건을 엄격히 고수해 보호를 부정했던 데서 출발하여, 2020년 '모 SNS

2) 이 사건은 2025년 11월 뮌헨지방법원의 1심 판결로서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3) 보고서가 인용하는 '울트라맨 사건'은 광저우인터넷법원 (2024)粤0192民初113号 판결(2024. 2. 8. 선고, 쌍방 항소 없이 확정)과, 이후 항저우인터넷법원 (2024)浙0192民初1587号 판결(2024. 9. 25. 선고, 항소심 (2024)浙01民终10332号 판결로 유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판결의 책임구성은 서로 구별된다. 광저우 판결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상 지식재산권 존중, 신고·처리체계 구축 및 생성물 표시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의무와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요소로 반영하였다. 반면 항저우 판결은 LoRA 모델 및 이를 통하여 생성된 이미지의 공개·전송 행위를 저작권법상 정보네트워크전송권 침해로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두 판결의 책임구성과 판단대상은 구별된다.

플랫폼 대 모 정보회사 사건'을 인간과 기계의 협업으로 생성된 결과물에 관한 보호기준을 제시한 초기 사례로 평가하며, 2023년 이른바 'AI 문생도(文生圖) 제1호 사건'[4]이 프롬프트 조정을 통한 이용자의 독창성을 인정했다고 소개한다. 나아가 보고서는 2024년 '울트라맨 사건'을 AI 파생물의 저작물성 인정을 넘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까지 인정하는 데로 나아간 사례로 서술한다. 이후의 사례에서는 '수차례 프롬프트 수정을 통한 원시 산출물과의 뚜렷한 차별화'가 요구되는 등 기준이 점차 세분화되었다고 정리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 저작권청이 AI 생성 요소를 포함한 저작물의 등록 여부를 인간 저작자의 창작적 기여와 최종 표현에 대한 통제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왔다는 점을 소개한다. 'Zarya of the Dawn' 결정에서는 Midjourney가 생성한 개별 이미지 부분은 인간 저작물로 볼 수 없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되, 이용자가 작성한 텍스트 및 작품 전체의 선택·조정·배열 부분은 저작권 등록대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Thaler v. Perlmutter' 사건에서는 DABUS를 유일한 저작자로 기재한 신청에 관하여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최초 창작 단계에서 인간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EU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Infopaq 사건'이 확립한 '저자 자신의 지적 창작' 기준과 이탈리아 대법원의 'The Scent of the Night 사건'을 중심으로, 인간의 창작적 선택·통제와 개입 정도가 저작물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흐름을 소개한다. 한편 체코 프라하 시법원의 'S. Š. v. TAUBEL LEGAL 사건'은 AI 생성 이미지는 자연인의 고유한 창작적 지적 활동의 결과가 아니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단순한 프롬프트는 아이디어 또는 주제에 그친다고 보아 권리주장을 배척한 사례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권리귀속 문제에 관하여는 영국 1988년 「저작권·디자인·특허법」 제9조 제3항의 '필요한 조치(necessary arrangements)' 원칙과, 일본 저작권법상 이용자가 프롬프트를 통해 개성적 판단을 실질적으로 반영했다면 저작권이 이용자에게 귀속된다는 '이용자 중심주의'를 비교하며, 두 모델 모두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법체계의 확장 해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고 평가한다.

4) 형평 보호전략 및 판단기준의 제안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두 갈래의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학습데이터 이용에 대해서는 생성 결과가 원저작물의 보호되는 표현을 재현하지 않을 것(비 재현성), 학습에 기술적 필요성이 있을 것, 원저작물의 이용허락 시장을 대체하지 않을 것(시장 비 대체성)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형적 공정이용'으로 인정하되, 개발자에게 데이터 출처 공개의무 및 필터링 등 기술적 준수조치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표현의 객관성'과, 이용자가 프롬프트의 단계적 설계·매개변수 조정·결과물 선별을 통해 표현 형성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인간개입'이라는 두 요건을 함께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표현의 객관성+인간개입'

4) 'AI 문생도 제1호 사건'은 베이징인터넷법원 (2023)京0491民初11279号 판결.

기준을 제안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위 보고서는 생성형 AI 저작권 문제를 입력 단계와 산출 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중국·미국·EU의 비교법적 흐름을 폭넓게 다루었다. 특히 '변형적 공정이용'과 '표현의 객관성+인간개입'이라는 두 갈래의 판단기준 제안은 추상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재판 실무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 요건으로 다듬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유용성이 크며, 법원 실무가들로 구성된 과제팀이 작성한 보고서라는 점에서 재판 실무의 고민을 생생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것도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가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적용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판단에서 프롬프트 이력·매개변수 설정값·반복 수정 기록과 같은 '생성 과정에 대한 증거'를 독창성 입증 자료로 취급하자는 접근은, 우리 법원이 유사 사건에서 이용자에게 요구할 입증책임의 구체적 내용을 설계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고 본다. 둘째,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 과제팀의 연구보고서가 학습데이터 이용에 관하여 제안한 '변형적 공정이용'의 세 요건(비재현성·기술적 필요성·시장 비대체성)은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라 AI 학습 목적의 저작물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데 하나의 비교법적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우리 법상 판단 요소를 대체하거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해당 논의는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에 관한 별도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도입 여부와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참고할 여지가 있으나, 일반적인 공정이용 판단과 개별적인 TDM 제한규정은 적용 구조가 다르므로 이를 TDM 면책요건으로 곧바로 원용할 수는 없다. 위 세 요건은 과제팀의 연구 제안으로서 사법해석이나 확립된 판례가 아니므로, 그 내용을 성급히 일반화하기보다는 향후 축적될 중국 판례와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刘建功·朱劼纯·徐飞云·薛忠勋·魏子钦(江苏省苏州市中级人民法院课题组), 「涉人工智能著作权司法保护规则研究」, 《数字法治》 2026年第3期, 168-180쪽.